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정혜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63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30.

발 의 자 : 정혜경 · 전종덕 · 윤종오  
손 솔 · 김준형 · 김재원  
이주희 · 용혜인 · 황운하  
한창민 · 이용우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.

또한 사용자가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했을 때 근로자의 선택권이나 제도 변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.

이로 인해 단기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퇴직급여 보장 체계에서 소외되고,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가입 및 변경 권한이 사용자에게만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.

이에,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고, 근로자의 제도 선택 및 변경권을 명문화 하여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,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배제한 단서 삭제함(안 제4조제1항 단서 삭제).
- 나. 사용자가 두 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, 근로자가 가입할 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, 가입한 퇴직급여제도를 한 차례 변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의2 신설).

##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퇴직급여제도 가입 및 변경) ① 사용자가 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, 근로자는 자신이 가입할 제도를 선택하여야 한다.

② 근로자는 가입한 퇴직급여제도를 한 차례만 변경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퇴직급여제도의 설정) ①          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          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            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           를 설정하여야 한다. <u>다만, 계            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            자,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          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          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           아니하다.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  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4조(퇴직급여제도의 설정) ① 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<u>&lt;단서 삭제&gt;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의2(퇴직급여제도 가입 및            변경) ① <u>사용자가 둘 이상의          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,            근로자는 자신이 가입할 제도            를 선택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근로자는 가입한 퇴직급여            제도를 한 차례만 변경할 수            있다.</u></p>